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포항 블루밸리 국 가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용도별 구역변경																								
	[단위 : m ²]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산업시설구역</th> <th>지원시설구역</th> <th>공공시설구역</th> <th>녹지구역</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기 정</td> <td>3,606,158</td> <td>41,155</td> <td>1,170,231</td> <td>964,831</td> <td>5,782,375</td> </tr> <tr> <td>변 동</td> <td>8,673</td> <td>△21,056</td> <td>△177,817</td> <td>△68,884</td> <td>△259,084</td> </tr> <tr> <td>변 경</td> <td>3,614,831</td> <td>20,099</td> <td>992,414</td> <td>895,947</td> <td>5,523,291</td> </tr> </tbody> </table>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3,606,158	41,155	1,170,231	964,831	5,782,375	변 동	8,673	△21,056	△177,817	△68,884	△259,084	변 경	3,614,831	20,099	992,414	895,947	5,523,291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3,606,158	41,155	1,170,231	964,831	5,782,375																			
변 동	8,673	△21,056	△177,817	△68,884	△259,084																				
변 경	3,614,831	20,099	992,414	895,947	5,523,291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구역별 면적 재산정																									
<input type="checkbox"/>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및 지원시설구역 내 건축할 건축물 범위 변경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신규) 장항국가생 태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용도별 구역																								
	[단위 : m ²]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산업시설구역</th> <th>지원시설구역</th> <th>공공시설구역</th> <th>녹지구역</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면 적</td> <td>1,513,120</td> <td>58,322</td> <td>423,164</td> <td>216,479</td> <td>2,211,085</td> </tr> </tbody> </table>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면 적	1,513,120	58,322	423,164	216,479	2,211,085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면 적	1,513,120	58,322	423,164	216,479	2,211,085																				

● 환경부고시제2016-190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6-178호, 2016. 9.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고유번호 06-5-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5,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 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 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	---	---

별표 3 중 고유번호 06-5-6란의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란의 8~15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물질명	CAS No.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Nonylphenol ethoxylate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7	Branched nonylphenol	90481-04-2
	8	Isononylphenol	11066-49-2
	9	Nonylphenol ethoxylates	27177-05-5
	10	α-(Nonylphenyl)-ω-hydroxy poly (oxy-1,2-ethanediyl), branched	68412-54-4
	11	α-(Nonylphenyl)-ω-hydroxy poly (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68412-53-5
	12	α-(Iso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37205-87-1
	13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26027-38-3
	14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127087-87-0
	15	1~14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6의 노닐페놀 [Nonylphenol ethoxylates; 68412-54-4, 37205-87-1, 26027-38-3, 127087-87-0] 제한내용 중 가목에 따른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의 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16-191호

「2014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97호, 2014.6.30.), 「201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84호, 2015.6.30.) 및 「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124호, 2016.6.30.)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경부 장관

2014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코오롱위더엔에너지(주) - 업 종 : 폐수 처리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테크 노파라 II 센터 S동 2325층 - 적용기준 : 업체 - 대표자 : 이수영	- 업체명 : 환경관리(주) - 업 종 : 폐수 처리업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 - 적용기준 : 업체 - 대표자 : 임추섭	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